

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[www.namwon.go.kr](http://www.namwon.go.kr)

선 람	기관의 장

제46호      2021. 11. 12(금)

## 고 시

- 남원시 고시 제2021-173호 도시계획시설(중합의료시설)사업(남원의료원 의료진숙소 증축공사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----- 1

## 공 고

- 남원시 공고 제2021-2176호 도로지정변경공고 ----- 3
- 남원시 공고 제2021-2154호 공시송달공고 ----- 4
- 남원시 공고 제2021-2195호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 ----- 6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남원시 고시 제2021-173호

## 도시계획시설(종합의료시설)사업(남원의료원 의료진숙소 증축공사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

남원 도시계획시설(종합의료시설)사업인 『남원의료원 의료진숙소 증축공사』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6조,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,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남원시 도시과(☎063-620-645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남 원 시 장

2021년 11월 12일

1. 사업의 종류 : 남원 도시계획시설(종합의료시설)사업
2.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, 사업의 규모
  - 가. 명 칭 : 남원의료원 의료진숙소 증축공사
  - 나. 사업의 위치 및 규모
    - 사업의 위치 : 남원시 고죽동 200번지 일원
    - 사업의 규모 :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: 100,562㎡
      - 기존 건축연면적 : 42,396.52㎡
      - 신설(의료진 숙소 증축) 건축연면적 : 2,964.12㎡
    - ※ 층수 지하1층 ~ 지상7층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 - 가. 성 명 :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박주영
  - 나. 주 소 : 전북 남원시 고죽동 200번지
4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사업인가일부터 ~ 2023년 5월 31일

5. 사업시행지의 위치도,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: 실음생략  
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(※ 붙임참조)

<편입 토지 조서>

NO	토지소재지		지목	지적 (m <sup>2</sup> )	편입 (m <sup>2</sup> )	소유자		소유권외의권리			비고
	동	지번				성명	주소	권리 종류	주소	성명	
합계				230,649	100,562						
1	고죽	200	대	35,015	35,015	남원의료원	고죽동 200				
2	고죽	200-5	천	23	23	국(건교부)					
3	고죽	299-1	임	725	149	남원의료원	고죽동 200				
4	고죽	623-1	천	129,084	12	국(건교부)					
5	월락	248-2	대	571	571	남원의료원	고죽동 200				
6	월락	252	대	35,669	35,669	남원의료원	고죽동 200				
7	월락	252-1	대	28,272	28,272	남원의료원	고죽동 200				
8	월락	252-2	대	218	218	남원의료원	고죽동 200				
9	월락	622-43	구	1,072	633	국(농림부)					

◎ 남원시 공고 제 2021 - 2176호

## 도로 지정 변경 공고

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1월 15일

남 원 시 장

○ 도로지정(변경) 공고내역

지정 번호	대 지 위 치	건축주 성 명	허가(협의) 및 신고번호	도로 길이 (m)	도로 너비 (m)	도로 면적 (㎡)	변경사항		
							변경전	변경후	비고
2021-4 6	남원시 왕정동 554-10	이*순	2021-건축과- 신축신고-262	44	1.28	31	왕정동 554-10 (51㎡)	왕정동 554-10 (31㎡)	대지면적 및 경계선 변경으로 인한 도로지정변경

남원시 공고 제2021 - 2190호

## 공 시 송 달 공 고

『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』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,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말소처리를 통지할 수 없어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기간 : 2021. 11. 15. ~ 2021. 11. 30. (15일간)
2. 공고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, 시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
3. 공시송달 내용

처분의 제목	소유자 현황		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
	성 명	주 소		위 치	건축물현황
건축물대장 직권말소 (말소일 : 2021.11.10.)	박○남	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306	건축물 부존재	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362	주 1층 목조 주택 33.15㎡ 부1 1층 돌담/스레트 창고 3.75㎡

#### 4. 기타사항

가.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 (☎063-620-6597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. 11. 15.

남 원 시 장

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14.7.28>

## 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 (전화번호: 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남원시장

귀하

### 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]

## 남원시 공고 제2021 - 2195호

「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1월 11일

남 원 시 장

##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시민안전보험에서 보상하는 담보내용을 추가하여 재난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시민안전보험 담보내용 추가 (안 제2조제8호)

### 3. 입법예고기간 : 2021. 11. 11. ~ 2021. 12. 1.(20일간)

### 4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 : 안전재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나. 의견 제출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)

(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(우) 55738 /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, 남원시청 안전재난과

라. 의견 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(063-620-6952), 팩스(063-620-6706), 이메일(luvich@korea.kr), 직접방문, 남원시 홈페이지 등

## 5. 기 타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안전재난과(☎063-620-695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6.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 : 붙임



#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1. 11. .  
 제출자 : 남 원 시 장  
 제안설명자 : 안전재난과장

## 1. 개정이유

시민안전보험에서 보상하는 담보내용을 추가하여 재난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시민안전보험 담보내용 추가 (안 제2조제8호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1. 11. . ~ 2021. 11. . (20일간)

- 결 과 :

2) 비용추계서 : 비 추계대상

3) 규제예비심사 : 비 심사대상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
남원시 규칙 제 호

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8.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담보내용) 조례 제4조에 따라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보험에 가입하여 보상하는 각종 사고 및 재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2조(담보내용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8.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</p>

##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

### 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**제3조(작성대상)**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-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- 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-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
 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  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

## 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목록		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
2. 제출자	성명(명칭)	
	주 소	
3. 의 견		
4. 기 타		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 :

성 명 :

(서명 또는 인)

전 화 :

**남원시장 귀하**

비 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</li> <li>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li> </ol>
-----	---